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3-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7조의2제2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정직, 계약직, 임시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07.09.)

제3조(명예퇴직 요건) ① 본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학교법인 건양학원 산하기관 근무기간 포함)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총장은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명예퇴직 후 1년 이내 타대학 전임교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9.08., 2018.03.21.)

②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타 명예퇴직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18.03.21.)

③ 총장은 교직원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의 허가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기준)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기준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 고지한다.(개정 2015.07.09.)

②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명예퇴직 신청)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매회 신청기한 내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7.09.)

② 전항의 명예퇴직일은 매학기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심사 및 결정) ① 명예퇴직 여부는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명예퇴직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통지) 명예퇴직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 예정 결정의 효력) 명예퇴직 예정자가 명예퇴직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 예정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명예퇴직 신청철회)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제7조의 통보를 받기 전 까지는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지급시기)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한다. 단, 명예퇴직 후 1년 이내에 타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조치 한다.(개정 2018.03.21.)

제11조(수당의 수령권자)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제12조(시행지침)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개정 2015.07.09., 2016.9.8.)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기본급 × 50%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기본급 × 50% × [60 +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명예퇴직 신청서

결재	담 당	팀 장	부처장	처 장	총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속년수		정년예정일	
정년 잔여기간		퇴직수당 수령자	
* 퇴직수당지급 대 상 기 간		* 지급액	금 원 (₩)
* 산 출 내 역			

본인은 명예퇴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첨부 : 사직원 1부

건양대학교 총장 귀하

*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